

# 사서자격제도 개선 방안 도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ibrarian Certification System in Korea

곽 동 철(Dong-Chul Kwack)\*\*

심 경(Kyung Shim)\*\*\*

윤 정 옥(Cheong-Ok Yoon)\*\*\*\*

### 목 차

- |                      |                          |
|----------------------|--------------------------|
| 1. 서론                | 3.4 문헌정보학 표준 교과과정의 설정    |
| 2. 사서의 자격 요건 및 시행 현황 | 3.5 전문사서제도의 도입           |
| 2.1 사서의 자격 요건 변화 추이  | 4.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방안 도출 및 적용 |
| 2.2 사서의 자격 취득과 양성 체계 | 4.1 사서직과 사서보조직의 구분       |
| 2.3 사서의 양성 및 취업 현황   | 4.2 사서의 직급과 직무 구분        |
| 3. 사서자격제도의 쟁점별 설문 분석 | 4.3 문헌정보학 표준교과과정의 설정     |
| 3.1 설문조사의 개요         | 4.4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모형        |
| 3.2 사서자격의 취득 방법      | 5. 결론                    |
| 3.3 사서직급의 재구분        |                          |

### 초 록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도서관 및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고,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행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한 도서관 전문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소양 계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인식을 기반으로 사서자격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우리나라 사서자격제도 관련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그 쟁점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사서자격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중·장기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During the 21st century, the rapid changes in libraries and the information environment require the reassessment of the education and certifica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in order to enhance their competen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icit and propose preliminary models in order to improve the librarian certification system in Korea. In doing so, the perceptions among librarians and users were surveyed through an online questionnaire methodolog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analyses, a mid- and a long-term plans for improving the overall library certification system have been proposed.

키워드: 사서자격제도, 사서, 정보전문가, 문헌정보학

Librarian Certification System, Librarians, Information Professionals

\* 이 논문은 2009년 4월 24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발표한 한국문헌정보학회 춘계학술발표회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kdc.kdc@hanmail.net)

\*\*\* 아이리스넷 대표이사(shim@irisnet.co.kr)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jade@cju.ac.kr)

논문접수일자: 2009년 5월 18일 최초심사일자: 2009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6월 2일

## 1. 서론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을 통한 정규 교육과정의 사서직 전문인력 양성은 최초의 4년제 도서관학과 및 대학원 석사과정이 연세대학교에 1957년에 개설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연세대학교에서는 그 당시 현직 도서관 종사자의 교육을 위해 한국도서관학당도 함께 설치하여 일정기간 운영한 뒤 문을 닫았고, 이어서 이화여대(1959년), 중앙대(1963년), 성균관대(1964년)가 각각 도서관학과를 설치하여 학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1963년 『도서관법』(법률 제1424호)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사서 자격제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되었다. 이후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반 여러 다른 대학들에 도서관학과가 신설되었고, 학과 신설이나 폐지 과정을 거치면서 양적 확대를 초래하여 2009년 현재 33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 및 7개 전문대학의 문헌정보과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사서의 양성과 정규 교육을 위해 대학에 학과가 설치 및 운영되어 왔지만, 그동안 사서자격증의 부여, 사서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회적 위상의 확보라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도서관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사서의 자격요건이나 교육과정 및 제도상의 문제점들이 도서관계 및 문헌정보학계에 심각하게 인식되는 상황이다. 이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도서관 및 정보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행태를 적절히 반영한 도서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소양 개발이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사서자격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현장에 접목시킬 것인가를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필자가 앞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발표한 “사서자격 제도의 변화 추이 및 개선 방향에 관한 고찰”(곽동철 2009, 339-361)의 후속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저자들이 2008년 12월까지 수행한 “사서직원 자격요건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현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사서자격제도 관련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그 쟁점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학회에서의 발표와 질의 및 응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바람직한 사서자격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중·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2. 사서의 자격 요건 및 시행 현황

### 2.1 사서의 자격 요건 변화 추이

우리나라 사서자격 제도는 1963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된 『도서관법』(법률 제1424호)에 의해 확립되었다. 이 법률의 제6조 제2항 “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의 자격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에 근거하여 1965년 3월 26일 제정된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86호) 제4조 [사서직원의 자격과 구분]의 제1항에서 사서직원의 자격 유형을 ‘정사서와 준사서’로 구분하고,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사서와 준사서의 자격 요건을 규

정하였다(이병목 2005). 그 이후 수차례 일부 및 전부 개정 등을 거쳐 2006년 10월 4일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이 공포되었다. 이어서 2007년 3월 27일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963호)이, 2007년 4월 4일 『도서관법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161호)이 제정·공포되었다.

상기 『도서관법시행령』제4조에서는 기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제4조 <별표 2>의 ‘사서직원 등의 배치기준’ 및 제5조 <별표 3>의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함께 규정하였다. 즉, 『도서관법시행령』제4조 제2호의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은 2008년 6월 5일 대통령령 제20797호에 의거 원격교육 등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시행령에서는 사서직원의 자격을 기존과 같이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로 구분하고 각각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급 정사서의 자격요건은 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 ②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자, ③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④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2급 정사서의 경우에는 ①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②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 ③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④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⑤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⑥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⑦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명시하고 있다.

준사서의 자격요건은 ①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 ②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중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사서자격 교과과정의 교과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 4월 4일 제정·공포된 『도서관법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161호)에서는 지금까지 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여 왔던 기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82호) 제7조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을 삭제하였다. 이처럼 법령개정에 따라 삭제된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은 『문화관광부 고시』제2007-9호(2007년 4월 11일)에 의거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으로 고시되었다. 이 고시에서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내용은 기존 내용과 동일하며, 이수학점은 30점으로 하되, 1학점은 16시간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2 사서의 자격 취득과 양성 체계

2007년에 나사렛대학은 접자문헌정보학과를, 이어서 2009년에는 송곡대학이 문헌정보과를 개설하였다. 2009년 4월 현재 국내의 사서인력 양성기관의 현황은 <표 1>에서와 같이 4년제 학부과정이 33개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및 교육대학원이 각각 28개교와 15개교 및 17개교(한양대 포함), 전문대학 7개교이며, 또한 대학 부설의 사서교육원 2개교 및 전문대학 부설의 사서교육원 1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 사서자격제도에 적용되는 실정법은 2006년 10월 4일자로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 및 2007년 3월 27일자로 개정된 『도서관법시행령』(제19963호)이다. 동법 제6조 제2항에 근거한 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3>에

서는 1급 정사서의 자격요건으로 4가지, 2급 정사서는 7가지, 준사서는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1급 정사서는 어느 전문직의 자격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손색이 없으며, 준사서로부터 출발하여 1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적정한 근무경력이나 일정수준의 학위를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 문헌정보학과를 설치한 국내 33개 대학에서는 기존의 부전공제에 의한 준사서 자격 취득 및 학부제의 시행과 함께 타 전공에 소속된 학생들이 문헌정보학을 복수전공함으로써 2급 정사서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다. 그 결과 상기 대학은 각 학과의 정원 이상으로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고 있다. 더욱이 성균관대학교, 계명대학교 및 부산여자대학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사서교육원이라는 단기 프로그램을 1급과 2급 정사서, 준사서 및 사서교사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 2.3 사서의 양성과 취업 현황

우리나라에서 사서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한 1966년부터 2008년까지의 발급 현황은 총 66,057명이다. 그 가운데 사서자격증별로 계산한 누적 인원수 및 비율은 1급 정사서 1,526명(2.3%), 2급 정사서 37,917명(57.4%), 준사서 26,614명(40.3%)이다. 전국적으로 매년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배출되는 사서직 인력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원의 졸업자들을 제외하고도 2,000여 명에 이를 정도이다(곽동철 2009, 355). 또한 사서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도서관계 종사자의 비율도 매우 낮아서, 2007년 12월말 현재 사서자격증을 발급 받은 63,643

〈표 1〉 사서의 정규 교육 및 양성 기관(학부, 대학원 등) 현황

(2009년 4월 현재)

대학(교)명	학부 설치연도	대학원설치연도		교육대학원 설치연도	사서교육원 설치연도	기 타
		석사	박사			
1. 강남대학교	1978	2005				
2. 건국대학교	1984					
3. 경기대학교	1983	1999	2001	1998		
4. 경북대학교	1974	1978	1999			
5. 경성대학교	1983	2005				
6. 계명대학교	1980	1989	1999	1998	1989	
7. 공주대학교	1983			1987		문헌정보교육과
8. 광주대학교	1984	2008				
9. 나사렛대학교	2007					점자문헌정보학과
10. 대구대학교	1982	1997		2000		
11. 대구가톨릭대학교	1976	1997		2003		도서관학과
12. 대전대학교	1991	2001		1997		
13. 덕성여자대학교	1980					
14. 동덕여자대학교	1980	1996				
15. 동의대학교	1982	2009				
16. 명지대학교	1980	1989	2008	1994		
17. 부산대학교	1984	1989	1993	2000		
18. 상명대학교	1980	1980	1993	1994		
19. 서울여자대학교	1980	1988				
20. 성균관대학교	1964	1971	1974	1999	1965	
21. 숙명여자대학교	1976	1983	2006	1982설치, 1999폐지		
22. 신라대학교	1979			1998		
23. 연세대학교	1957	1957	1980	1979폐지, 2003신설	1957설치, 1971폐지	한국도서관학당
24. 이화여자대학교	1959	1959	1987	1999폐지		
25. 전남대학교	1980	1992	1998	2004		
26. 전북대학교	1980	1999	2002	2000		
27. 전주대학교	1983	1994				
28. 중부대학교	1994	2005		2003설치, 2005폐지		
29. 중앙대학교	1963	1972	1983	1997		
30. 청주대학교	1979	1984		1995		
31. 충남대학교	1979	1991	2001			
32. 한남대학교	1981	1997				
33. 한성대학교	1981	1998	2006			
(한양대학교)				1980		2007년 2학기 전공폐지
소 계	33(1)	28	15	16(1)	2	
1. 대림대학	1994					
2. 동원대학	1997					
3. 부산여자대학	1970				1997	전공심화과정설치
4. 숭의여자대학	1972					전공심화과정설치
5. 인천전문대학	1981					
6. 창원전문대학	1980					
7. 송곡대학	2009					
(계명문화대학)	1974					폐과
(동부산대학)	1979					폐과
소 계	7				1	

명 가운데, 약 16% 정도인 10,320명이 도서관계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08).

더욱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알리미 사이트(<http://www.academyinfo.go.kr>)에 나타난 정보에 의하면 매년 졸업생 가운데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는 사서자격증 소지자의 비율은 19.6% 정도로 실질적 취업률이 높지 않다. 그 밖의 취업자의 상당수도 비정규직, 임시직, 기간제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대학의 문헌정보학 혹은 도서관학의 정규 교육과정 외에 사서를 배출하는 단기 프로그램인 사서교육원의 계속적 존치 및 신규인가라고 할 수 있다.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이 양성한 사서직 인력의 규모는 『한국사서교육원 요람(2008-2009)』에 의거하면 1965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7,645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76명의 1급 정사서, 2,250명의 2급 정사서, 4,115명의 준사서 및 700명의 사서교사가 배출되었다. 이러한 수치에 근거하면 상기 한국사서교육원 한 곳에서 현재 사서자격증 소지자 누계 66,057명 가운데 사서교사를 제외하고도 6,441명이 양성되어 거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매년 이 곳을 통해 230~240여명이 졸업하여 신규로 사서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1989년 계명대학교와 1997년 부산여자대학에 사서교육원을 추가로 인가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상기 3개 사서교육원의 최근 3년간 졸업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00명이

며, 이 가운데 1급 정사서가 9명, 2급 정사서가 205명, 준사서가 78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곽동철 2009, 358). 이는 매년 적어도 7~9개 대학 졸업생 규모의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 도서관계에서도 사서자격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자격증 소지자의 양산이라는 문제를 야기하는 사서교육원의 계속 존치나 재교육기관으로의 전환 문제를 공론화시켜 논의해야 한다. 특히, 문헌정보학 박사학위 과정 조차 설치되지 않은 전문대학 부설 사서교육원이 1급 정사서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제는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전문직 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3. 사서자격제도의 쟁점별 설문 분석

#### 3.1 설문조사의 개요

이 연구에서는 현행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2008년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설문조사를 도서관계, 문헌정보학계 및 일반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그 최종 응답자 1,752명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운데 일부만 예시하면 <표 2>와 같다.

여기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일반인의 비율이 9.6%(176명) 밖에 되지 않는 것은, 결국 이 설문조사는 사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인 최종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

〈표 2〉 설문 응답자의 직업, 근무처, 자격증 등 분포

변인	속성	%	응답자수
직업	도서관직원(사서직)	56.3	1,032
	도서관직원 및 관계자(행정직, 기술직 등)	8.1	142
	문헌정보학과 교원(교수, 강사 등)	2.7	48
	문헌정보학과 재학생	20.2	354
	일반인(도서관 이용자)	9.5	174
	일반인(도서관 이용 경험 없음)	0.1	2
	합계	(100%)	(1,752명)
근무처	공공도서관	16.5	269
	대학도서관	24.5	429
	학교도서관	19.1	334
	전문도서관	4.6	81
	기타(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타)	35.3	619
	합계	(100%)	(1,752명)
자격증	1급정사서	10.8	169
	2급정사서	53.5	338
	준사서	12.5	219
	자격증없음	23.2	406
	합계	(100%)	(1,752명)

는 제한점을 갖고 있지만,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사서 및 도서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 3.2 사서자격의 취득 방법

현행 사서자격은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및 준사서로 나누어 부여되고 있다. 1999년 이후 대학에서 학부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현재 1급 정사서 및 준사서 자격 부여 문제는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2급 정사서의 경우에는 전공 30~36 학점 이수로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이는 사서의 자질하락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서 현행 사서자격 부여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표 3〉과 같은 응답 분포를 보여주었다. 전체 응답자의 가장 많은 수인 31.2%(546명)가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하

였다. 그 다음은 27.7%(488명)가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또한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분야 및 자격에 따른 이수과목 지정을 21.7%(381명)가 응답하였다.

#### 3.2.1 취득 학점의 상향 조정

취득 학점을 상향 조정할 경우, 필요한 학점수에 대한 의견의 분포는 〈표 4〉와 같다. 현행 사서자격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취득 학점 수를 늘리자고 한 224명의 응답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인 38.8%(87명)가 전체 취득 학점 수를 법 개정 이전의 60~69학점으로 늘려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50~59학점으로 늘리는 것에는 26.3%(59명), 40~49학점으로는 20.1%(45명)가 각각 응답하였고, 70~79학점으로써까지 늘려야 한다고 한 응답자들의 수는 13.8%(31명)로 비교적 적었다.

〈표 3〉 사서자격 취득 방법의 개선안

사서자격 취득 방법의 개선안	%	응답자수
현 제도를 유지하되, 취득학점 수 상향	12.8	224
현 제도를 유지하되, 분야 및 자격에 따른 이수과목 지정	21.7	381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27.7	486
자격시험제도의 도입	31.2	546
기타	6.6	115
합계	(100%)	1,752명

〈표 4〉 사서자격 취득 학점의 상향 조정에 대한 의견

사서자격 부여를 위한 전체 취득학점 수	%	응답자수
40~49학점	20.1	45
50~59학점	26.3	59
60~69학점	38.8	87
70~79학점	13.8	31
기타	0.9	2
합계	(100%)	224명

### 3.2.2 자격시험제도의 도입

사서자격 시험을 실시할 경우, 실시 빈도에 대한 의견의 분포는 〈표 5〉와 같다. 현행 사서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격 시험제도를 도입하자고 한 546명의 응답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인 53.7%(293명)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36.6%(200명)의 응답자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반면 매년 4회 혹은 6회까지 정기적 자격시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낮은 비율이지만 각각 5.1%(28명), 1.8%(10명)로 의견의 다양성을 보였다.

### 3.3 사서직급의 재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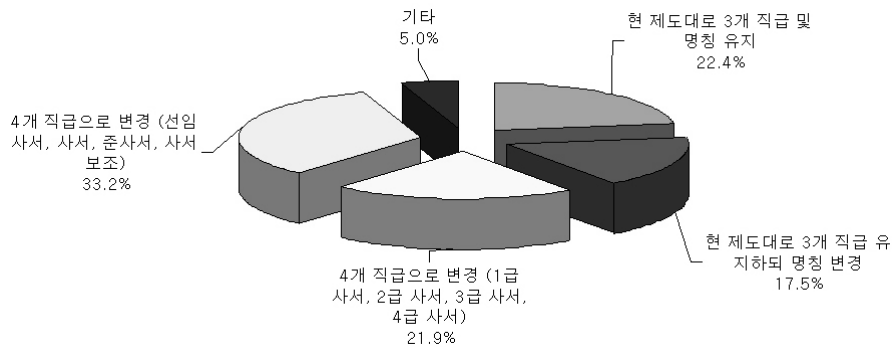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의 사서자격은 1급 정사서, 2

급 정사서 및 준사서라는 3개 직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은 사서의 자격 요건을 세분하고 있다. 〈그림 1〉은 현행 사서자격의 직급 조정에 대한 응답 분포이다. 가장 많은 응답자인 33.2%(581명)는 4개 직급으로 변경하며, 명칭은 선임사서, 사서, 준사서, 사서보조로 변경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였고,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가 4개 직급으로 변경하며, 명칭은 1급 사서, 2급사서, 3급사서, 4급사서로 변경하자고 하였다(22.4%, 392명). 또한 현재대로 3개 직급을 유지하되, 명칭은 변경하자고 하는 응답자도 있었고(17.5%, 307명), 기타로 응답한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5.0%, 88명). 이처럼 응답자의 대다수인 72.7%가 현 제도의 직급 또는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2.4%(392명)는 현 제도대로 3개 직급 및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표 5〉 사서자격 시험의 실시 빈도에 대한 의견

사서자격 시험의 빈도	%	응답자수
매년 1회 정기적으로	53.7	293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36.6	200
매년 4회 정기적으로	5.1	28
매년 5회 정기적으로	1.8	10
기타	2.7	15
합계	(100%)	546명



〈그림 1〉 사서자격 직급 재구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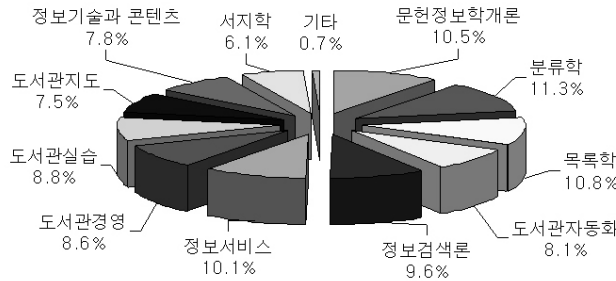
### 3.4 문헌정보학 표준 교과과정의 설정

현재 문헌정보학 및 도서관학 전공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마다 표준 교과 과정이 정해지지 않아 서로 다른 교과 내용을 개설하여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연유로 문헌정보학 표준 교과과정의 채택이 필요한가를 질문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91.9%(1,610명)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부 필요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들도 있었으나(9.1%, 142명), 10%에 미치지 않는 비율로서 대체로 응답자 대부분이 표준 교과과정을 채택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문헌정보학 표준 교과과정을 채택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자들이 지적한 과목들의 분포는

〈그림 2〉와 같다. 복수의 응답을 허용한 결과로 모두 12,781건이 응답되었고, 12개 과목들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분류학(11.3%, 1,438명), 목록학(10.9%, 1,379명), 문헌정보학개론(10.5%, 1,343명), 정보서비스(10.1%, 1,285명), 정보검색론(9.6%, 1,228명) 순이었다. 그밖에 도서관 자동화, 도서관 경영, 도서관 실습, 정보기술(IT)과 콘텐츠, 독서지도 등이 순서대로 언급되었다.

### 3.5 전문사서제도의 도입

현재 도서관 현장에서는 도서관의 유형별, 업무영역, 주제 분야 및 직무난이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전문성을 가진 전문사서에 대한 수요가



〈그림 2〉 문헌정보학 표준 교과과정 핵심 과목(안)

〈표 6〉 전문사서제도의 도입(안)

전문사서제도의 도입	%	응답자수
관종별 구분(예: 대학도서관 사서, 전문도서관 사서, 공공도서관 사서 등)	16.4	392
업무영역별 구분(예: 목록사서, 참고사서, 시스템 사서, 어린이서비스 사서 등)	31.6	755
주제별 구분(예: 의학전문사서, 법학전문사서, 화학전문사서 등)	46.0	1,101
기타	2.1	51
해당사항 없음	3.9	93
합계	(100%)	(2,39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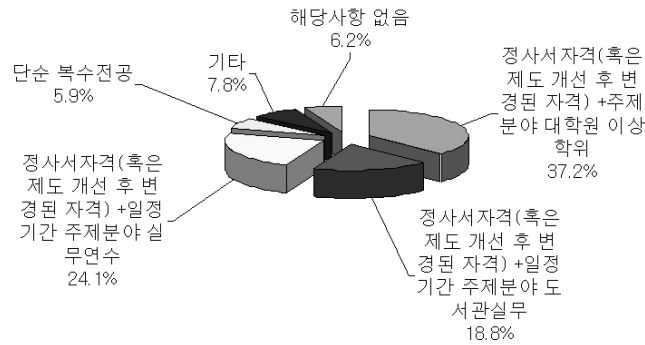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문사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82.9%(1,458명)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은 〈표 6〉과 같다. 복수의 응답을 허용하여, 전체 응답 2,392건 가운데 의학전문사서, 법학전문사서, 화학전문사서 등 주제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46.0%(1,101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예를 들어, 목록사서, 참고사서, 시스템 사서, 어린이서비스 사서, 청소년서비스 사서 등과 같이 업무영역별로 구분하자는 의견이 31.6%(755명)에 이르렀다. 이외에 16.4%(392명)의 응답자는 예를 들어 대학도서관 사서, 전문도서관 사서, 공공도서관 사서 등과 같이 관종별로 구분하자는 의견

도 나타났다.

### 3.5.1 주제 전문사서의 자격 부여 방법

주제 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떻게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분포는 〈그림 3〉과 같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주제 전문사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정사서 자격(혹은 제도 개선 후 변경된 자격)과 함께 주제 분야에서 대학원 이상 학위를 취득(예: 대학에서 문헌정보학 전공 후 대학원에서 경제학 전공 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37.2%, 652명).

그 다음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24.1%(422명)가 정사서 자격(혹은 제도 개선 후 변경된 자격)과 함께 일정기간의 주제 분야 도서관 실무 연수과정을 이수(예: 대학에서 문헌정보학 전



〈그림 3〉 주제 전문사서의 자격 부여 방법

공 후 법학 훈련과정 120시간 이수 등) 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라고 하였고, 18.8%(330명)는 정사서 자격(혹은 제도 개선 후 변경된 자격)과 함께 일정기간의 주제 분야 도서관 실무경력(예: 대학에서 문헌정보학 전공 후 의학도서관에서 3년 이상 근무 등)을 갖는 게 적합하다고 하였다. 일부 응답자(7.8%, 137명)는 예를 들어 대학에서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을 복수 전공하는 것과 같이 단순 복수전공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였으나 소수에 그쳤다. 기타 구분 방식에 대한 의견 역시 매우 적었다(6.2%, 108명).

### 3.5.2 관종별 혹은 업무영역별 전문사서 관종별 혹은 업무영역별 전문사서제도를 도

입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분포는 〈표 7〉과 같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전문사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정사서 자격(혹은 제도 개선 후 변경된 자격)과 함께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분야 도서관 실무경력(예: 대학에서 문헌정보학 전공 후 일정규모 이상의 도서관에서 어린이 서비스 3년 이상 담당 후 어린이 전문사서 인정 등)을 갖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35.1%, 615명).

그 다음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25.0%(438명)가 정사서 자격(혹은 제도 개선 후 변경된 자격)과 함께 일정기간의 전문분야 도서관 실무 연수과정을 이수(예: 대학에서 문헌정보학 전

〈표 7〉 관종별 혹은 업무영역별 전문사서의 자격 부여 방법

관종별 혹은 업무영역별 전문사서의 자격 부여 방법	%	응답자수
정사서자격(혹은 제도 개선 후 변경된 자격) +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	35.1	615
정사서자격(혹은 제도 개선 후 변경된 자격) + 전문분야 자격시험	22.7	398
정사서자격(혹은 제도 개선 후 변경된 자격) + 일정기간 전문분야 실무연수	25.0	438
단순 복수전공	4.0	70
기타	5.7	100
해당사항 없음	7.5	131
합계	(100%)	(1,752명)

공 후 한국도서관협회의 어린이서비스 훈련과정 120시간 이수 후 어린이 전문사서 인정 등)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라고 하였고, 22.7%(398명)는 정사서 자격(혹은 제도 개선 후 변경된 자격)과 함께 전문분야의 자격시험(예: 대학에서 문헌정보학 전공 후 목록 전문 자격시험 통과 후 목록 전문사서 인정 등)을 치르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소수의 응답자(4.0%, 70명)는 예를 들어 대학에서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을 복수 전공하는 것과 같이 단순 복수전공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였고, 기타 구분에 동의한 사람들도 일부(5.7%, 100명) 있었다.

#### 4.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방안 도출 및 적용

##### 4.1 사서직과 사서보조직의 구분

우리나라 사서자격제도는 현재 1급, 2급 정사서, 준사서로만 구분되어 있어서 사서의 직급을 다양한 도서관의 유형이나 도서관 내 각 업무의 전문성 난이도에 따라 재구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직급의 구분과 관련하여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사서자격의 한 등급으로서 준사서를 인정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준사서는 그 자체가 도서관정보전문직이 아니라, 도서관 전문직인 사서의 보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전공자가 60학점 정도를 이수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받고, 대학의 문헌정보학 전공자는 30~36학점 정도만 이수하여도 2급 정사서 자격증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정동렬 2007, 8).

여기서 분명 대학의 학부제 하에 이수하는 전공 학점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지만,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과 실용적 기술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에서 이수하는 학점을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다.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장기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사서의 전문직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새로운 사서자격제도의 직급 구분은 우선 전문직인 사서와 사서의 보조직인 준사서의 경계를 먼저 구분하고, 각기 직무의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현행 『도서관법』에서도 전문직과 준전문직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어서, 사서직 공무원 임용 시에도 <표 8>에서와 같이 그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서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되며, 사서직은 국회사무처에서 공채하는 국회도서관 사서직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 특별채용에 의하여 선발된다.

이러한 특별채용은 <표 8>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급에 맞는 자격증 보유를 시험자격으로 제한하는데, 9급이 준사서 이상 소지자, 8, 7, 6급은 2급 정사서 이상 소지자, 5급은 1급 정사서 이상이며, 기능직의 사무원(사서) 8급도 준사서 이상, 기능직 6, 7급은 2급 정사서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변상황의 정리를 위하여도 국내 문헌정보학계의 도서관계 학자, 전문가, 실무자, 정책결정자 및 일반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은 의견을 모아 현행 『도

〈표 8〉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8]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개정 2007.5.16)

직렬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사서	사서	경력5년의 1급정사서	1급정사서, 경력6년의 2급정사서	경력3년의 2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사무	사서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2급정사서(3년)		2급정사서	준사서	

서관법』에 사서직과 사서보조직을 구분하도록 개정된 후, 이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반영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2 사서의 직급과 직무 구분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각 직종 내에서 직급을 구분하되, 업무의 전문성 난이도만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주요 나라들은 사서 혹은 정보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등급별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日本図書館情報學會 2006, Claudia Lux 2003,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2005, European Council of Information Associations 2004, U.K.

CILIP 2005,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8).

〈표 9〉에서와 같이 한 나라의 특정한 등급이 다른 나라의 특정한 등급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도서관직원을 전문직과 비전문직 혹은 준전문직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문직인 사서는 일본과 같이 하나의 범주로 두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 안에서 경력과 지식 및 기술 수준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각 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근무 경력이나 연한만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구체적 지식이나 소양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을 감안하면서, 우리나라 사서 직급의 구분 및 자격 요건을 새롭게 설정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그 직종은 사서직과 사서보조직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

〈표 9〉 주요 국가의 사서 자격 요건의 구분

구분	일본	독일	호주	유럽	영국	미국
전문직	사서	3등급 Subject Specialist	5등급 Librarian	4등급 IS Expert	Fellowship	Senior Librarian
			4등급 Librarian			
			3등급 Librarian			
		2등급 Certified Librarian	2등급 Librarian	3등급 IS Manager	Chartered Member	Librarian
1등급 Librarian						
비/준 전문직	사서보	1등급 FAMI	LT2등급	2등급 IS Technician	Certification	LIS Associate
			LT1등급			LIS Assistant
			Library Assistant	1등급 IS Assistant	LIS 직원	Clerk

〈표 10〉 사서 직급의 구분 및 자격요건(안)

직종	등급	명칭	자격요건
사서직	1급	선임사서	1. 2급전문사서 자격증 + 도서관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 자격인증기관의 인증 2. 3급사서 자격증 + 도서관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외 박사학위 취득 + 자격인증기관의 인증 3. 문헌정보학/도서관학 박사학위 취득자 + 도서관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 자격인증기관의 인증 4. 3급사서 자격증 + 도서관 관련 실무경력 15년 이상 + 자격인증기관의 인증
	2급	전문사서	1. 3급사서 자격증 + 도서관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 주제 분야 석사학위 취득 + 자격인증기관의 인증 → 전문사서(주제분야) 2. 3급사서 자격증 + 도서관 관련 실무경력 8년 이상(특정 업무 3년 이상 수행) + 자격인증기관의 인증 → 전문사서(직무분야) 3. 3급사서 자격증 + 도서관 관련 실무경력 9년 이상 + 자격인증기관의 인증 → 전문사서
	3급	사서	1. 국내 대학의 문헌정보학/도서관학 학사학위 취득자(대학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전공 표준교과과목* 60학점 이상 이수자) + 자격인증기관의 인증** 2. 외국 인증 도서관/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취득자 + 자격인증기관의 인증 3. 타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석사학위 취득자(문헌정보학/도서관학 표준교과과목 중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추가 이수자) + 자격인증기관의 인증 4. 타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대학원의 도서관교육/사서교육 석사학위 취득자(문헌정보학/도서관학 표준교과과목 중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추가 이수자) + 자격인증기관의 인증 5. 문헌정보학/도서관학 학사학위 취득자(학부제 등으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표준교과과목 60학점 미만 이수자) + 3급사서 자격시험 합격자 6.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 취득자(문헌정보학/도서관학 표준교과과목중 필수과목 15학점미만 추가 이수자) + 3급사서 자격시험 7. 외국 비인증 도서관/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취득자 + 3급사서 자격시험 합격자 8. 사서보 자격증 + 도서관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3급사서 자격시험 합격자
사서보조직		사서보	1. 국내 전문대학의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전문대학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전공 표준교과과목 45학점 이상 이수자) + 자격인증기관의 인증 2.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외 학사학위 + 사서보 자격시험 합격자 3.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외 전문학사학위 + 도서관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 + 사서보자격시험 합격자 4. 고등학교 졸업자 + 도서관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사서보 자격시험 합격자

가운데, 사서직은 3개 등급을 두어, 1급 선임사서, 2급 전문사서, 3급 사서로 구분하고, 사서보조직은 현재의 준사서를 사서보로 개칭한다.

#### 4.3 문헌정보학 표준교과과정의 설정

최근 도서관 정보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정보전문가로서 사서가 가져야 할 지식, 기술 및 소양의 내용이 변화했고, 그에 따라 교육의 내용 또한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 따라서 사서자격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반드시 문헌정보학 표준 교과

과정(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문직인 사서의 교육을 대학원 수준에서 시행해 왔고, 나라마다 상이한 수준으로 교육해 왔던 유럽연합의 여러 나라들은 공통의 고등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대학원 수준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 또한 현재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지만, 점차 대학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 필요한 교과과정(안)을 마련하였다(日本図書館情報學會 2006, Sonja Haerkoenen, 2007, ALIA 2005, U.K. CILIP 2005, ALA 2008).

우리나라는 현행 학부 수준의 교육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반드시 표준 교과과정을 설정하여 그 가운데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두고, 앞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최소 취득 학점 수를 상향 조정하여 이들을 반드시 수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표준 교과과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엄영애 2003, 김세훈 2004). 첫째, 최신 도서관 및 정보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사서와 정보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전통적·새로운 지식, 기술과 소양에 관한 이론 및 실습 과목을 필수와 선택 과목으로 규정해야 한다. 둘째, 도서관 실습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문헌정보학 교육과 도서관 현장에서의 요구를 일치시켜야 한다. 셋째, 주제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목을 포함하여 향후 전문사서제도가 채택될 경우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표 11>의 문헌정보학 표준 교과과정(안)은 사서자격제도가 개편되고,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학점의 수를 상향 조정하면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들의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한 교과과정은 선진국 및 국내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와 사례들을 참조하여 문헌정보학 개

론, 정보접근과 이용자, 정보자원과 컬렉션, 정보구조와 조직, 정보기관과 서비스, 정보시스템, 경영과 관리, 및 도서관 실무 실습의 8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각 영역에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한 과목의 내용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포괄하는 특정한 과목의 명칭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각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편의상 '공통기초', '핵심필수', '필수'로, 그 밖의 과목을 '선택'으로 구분하였다.

#### 4.4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모형

지금까지 도서관 현장과 문헌정보학 학계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로 수집된 의견 및 현재 우리나라 상황의 포괄적 고찰 등을 기반으로 하여 사서자격제도의 자격 취득 방법, 자격 재구분 및 요건, 문헌정보학 표준교과과정 등의 주요 논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사서자격제도 확립을 위해 채택 가능한 몇 가지 개선 모형(안)을 <그림 4>에서와 같이 제안하고, 이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장·단기적 종합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곽동철, 심 경, 윤정옥 2008, 134-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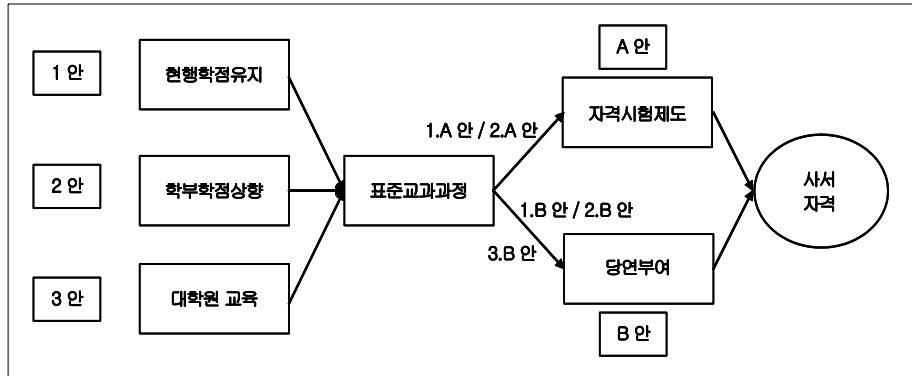
<표 11> 문헌정보학/도서관학 표준교과과정

(범례: 공통기초 ⊙, 핵심필수 ★, 필수 ○, 선택 △)

핵심영역			
영역	내용	과목명	필수/선택
문헌정보학개론	문헌정보학개론	문헌정보학개론	○
	전문직 윤리		
	도서관 문화와 역사	도서관사	○
	정보와 사회	정보사회론	○
	연구방법론	도서관연구방법론	△

정보접근과 이용자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	정보추구행태론	○
	커뮤니티분석		
	정보 리터러시	이용자 교육론	△
	이용자/서지교육(BI)		
정보자원과 컬렉션	독서지도론	독서지도론	△
	장서개발	장서개발론	○
	전자자원관리	디지털도서관관리론	△
	고서, 고문서관리	서지학	△
	기록	기록관리론	△
	주제 및 전문컬렉션	주제정보자료론	△
	보존	장서보존론	△
	기타 주제	정보매체론	△
정보구조와 조직	목록(Catalog): OPAC, 종합목록 등	목록법(I), 인쇄자료	★
	편목(Cataloging): 인쇄, 전자, 멀티미디어 매체 등	목록법(II), 전자매체 기타	○
	분류: 분류체계, 주제표목, 시소러스 등	분류법	★
	색인, 초록		
정보시스템	정보표현과 메타데이터	정보검색론	○
	정보표현과 검색기법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정보기술과 네트워크	도서관자동화(I)	★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데이터베이스론	○
	정보시스템 설계/개발	도서관자동화(II)/도서관시스템론	○
	검색시스템 구조/알고리즘/설계		
정보기관과 서비스	정보서비스: 일반	정보서비스론	★
	온라인/오프라인 참고서비스		
	주제서지와 학술 커뮤니케이션	학술정보서비스론	△
	정보서비스: 어린이, 청소년	아동서비스론	△
	정보서비스: 다문화, 장애우,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서비스론(장애자서비스론)	△
	도서관 협력과 네트워킹	도서관협력론	○
경영과 관리	도서관 관종별 경영	공공도서관경영	△
		대학도서관경영	△
		전문도서관경영	△
		학교도서관경영	△
	도서관 마케팅, 기획과 홍보	도서관경영론	★
지식경영(KM)과 비용/효과 분석			
기타 주제			
정보정책과 윤리	지적 자유와 저작권	도서관정보정책론	○
	법과 제도		
	정보정책과 윤리		
	기타 주제		
도서관실무실습		도서관실습	◎





〈그림 4〉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모형(안)

우선 사서자격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모형은 사서직급의 재구분(안)을 기반으로 하고, 현재 2급 정사서인 전문직 사서의 최초 직급인 3급 사서(안)의 자격 취득을 그 대상으로 〈그림 4〉에서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최초 직급의 사서 자격 취득 이후에는 상위 직급에서 요구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직급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만약 현행과 같은 2개 직급을 유지한다고 해도 역시 최초 직급인 2급 정사서의 자격 취득에 이러한 모형(안)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사서자격 취득방법의 모형은 크게 3가지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1안은 사서자격 취득을 위하여 현행 학점을 유지하는 방안, 제2안은 학부 학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제3안은 대학원으로 교육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사서자격제도의 장기적 개선 모형은 제3안과 같이(전문)대학원을 기반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전문)대학원 기반 개선 모형은 주요 선진국에서처럼 사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먼저 학부에서 주제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

학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같이 장기적 측면에서(전문)대학원 기반 모형을 채택하여 대학원 과정에서 사서직을 위한 교육을 수행할 때, 가능한 첫 번째 방안은 문헌정보학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안은 현행과 같은 일반대학원의 문헌정보학 전공을 인증(accreditation)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서자격제도의 단기적 개선 모형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이수 학점의 상향조정을 기반으로 제2.A안(사서자격시험 부과) 및 제2.B안(당연 부여)을 결합한 병합모형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개선 모형은 우리나라 사서자격제도가 궁극적으로는(전문)대학원을 기반으로 한 체제로 나아가기까지, 현행 제도의 골격을 크게 바꾸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단기적 개선 모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사서자격을 재구분하여 우선 사서직과 사서보조직으로 직종을 구분하고, 전문직으로서 사서는 3개 직급으로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최초의 전문직 등급인 3급 사서에서 시작하여, 2급 전문사서, 1급 선임사서로 승급

할 수 있는 자격체계 하에서, 3급 사서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안이 된다. 3급사서는 일정 기간의 도서관 실무경력 취득 후 적절한 주제 혹은 직무 전문성을 달성한 후 상위직급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단계적 사서자격제도 개선 모형은 우선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학점을 적어도 60~70학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학점은 반드시 표준교과과정의 필수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안에 적정 기간의 도서관 현장실습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사서자격을 취득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격시험제도를 채택하여 합격자에 한하여 사서자격을 발급하거나, 현행 제도와 같이 졸업과 동시에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서자격을 취득하는 방안은 앞서 명시한 3급 사서자격요건(안)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 5. 결 론

우리나라는 문헌정보학 전공자에게 졸업과 동시에 사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서자격제도에 대한 개선 논란은 학계와 도서관 실무현장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학의 학부제가 실시되면서 30~36학점 정도의 전공을 이수한 자에게 사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의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설문 응답자들은 사서직이 전문직으로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서의 자격을 강화하고 자질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사서직이 스스로 전문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회적으로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외형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요건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설문 응답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으로 현행 문헌정보학 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한 후 사서자격을 당연히 부여하자는 의견과 사서자격 시험제도를 채택하자는 의견 및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엇비슷한 비율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문제는 세부적으로 사서양성체계, 사서자격요건, 사서자격인증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 사서자격제도는 도서관 관련 법규의 제정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선도하는 기능을 지녀야 한다. 또한 사서자격제도는 사서양성체계를 현행 체제에서 대학교육 강화나 대학원 중심 체제로 전환할 경우에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서자격시험의 부과 등과 같은 사서자격요건의 변경이나 대학 문헌정보학 표준교과과목 인증의 경우에도 역시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표준교과과정은 현행 도서관법규와 전술한 국내·외 자료들을 참조하여 각급 사서 자격별로 필수 및 선택 과목을 나누어 편성한 것이다.

따라서 사서자격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중

심이 되어 문헌정보학계나 관중별 도서관단체 등과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각의 세부 항목에 대해 충분한 조사·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도서관협회는 사서자격제도 개선 관련 제반 법규를 개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기반조성단계, 확산단계, 성숙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도서관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유관 정부부처의 지원을 최대한 유인할 수 있는 노력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광동철. 2009. 사서자격 제도의 변화 추이 및 개선 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339-361.
- [2] 광동철, 심 경, 윤정옥. 2008. 『사서직원 자격요건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3] 김세훈. 2004. 『도서관 전문성 강화 방안: 사서 전문성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4] 엄영애. 2003. 문헌정보학과의 코어 교과목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33-49.
- [5] 이병목. 2005. 『도서관법규총람』. 전2권. 서울: 구미무역출판부.
- [6] 이제환, 이기명, 김정호, 윤유라, 이은주. 2005.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현장 사서의 평가와 요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4): 45-69.
- [7] 정동렬. 2007. 사서자격제도 개선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2): 5-29.
- [8] 日本図書館情報學會. 2006. 『情報専門職の養成に向けた図書館情報學教育体制の再構築に關する總合的研究』. 東京: 日本図書館情報學會. [online]. [cited 2008.12.30]. <<http://wwwsoc.nii.ac.jp/jslis/liper/report06/report.htm>>.
- [9]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8. "Standards for Accreditation of Master's Program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Adopted by the Council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Jan. 5, 2008. [online]. [cited 2008.12.30]. <[http://www.ala.org/ala/educationcareers/education/accreditedprograms/standards/standards\\_2008.pdf](http://www.ala.org/ala/educationcareers/education/accreditedprograms/standards/standards_2008.pdf)>.
- [10] ALA. "Guidelines for Choosing a Master's Program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online]. [cited 2008.12.30]. <<http://www.ala.org/ala/educationcareers/education/accreditedprograms/guidelinesforchoosing/index.cfm>>.
- [11]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ALIA). ALIA Recognition of Courses: Criteria for the Recognition of First-award cours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Management

- at Librarian and Library Technician Level. [online]. [cited 2008.12.30].  
<<http://www.alia.org.au/education/courses/criteria.html>>.
- [12]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ALIA). 2005 수정.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ector: Core Knowledge, Skills and Attributes." [online]. [cited 2008.12.30].  
<<http://www.alia.org.au/policies/core.knowledge.html>>.
- [13] European Council of Information Associations(ECIA). 2004. *EUROGUIDE LIS. Vol. 1 Competencies and Aptitudes for European Information Professionals*. 2nd Entirely Revised Ed. [online]. [cited 2008.12.30]. <<http://www.certidoc.net/en/euref1-english.pdf>>; 2004. *EUROGUIDE LIS. Vol. 2, Levels of Qualification for European Information Professionals*. [online]. [cited 2008.12.30]. <<http://www.certidoc.net/en/euref2-english.pdf>>.
- [14]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Information Studies, UCLA. "Scope Statements for MLIS Specializations." [online]. [cited 2008.12.30].  
<<http://is.gseis.ucla.edu/programs/degrees/specializations.htm#library>>.
- [15] Haerkoenen, Sonja. 2007. The European Perspective: Libraries and Librarianship in Germany. In: HEWIT/WHELF Colloquium 2008, 2-6 June 2008, Gregynog, Wales. (Unpublished)
- [16] Lux, Claudia. 2003. "The German Library System: Structure and New Developments." *IFLA Journal*, 28(2): 113-128. [online]. [cited 2008.12.30].  
<<http://www.ifla.org/IV/ifla69/article-lux.pdf>> pp.118-119.
- [17] The Information School,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MLI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urse Description." [online]. [cited 2008.12.30].  
<<http://www.washington.edu/students/crscat/lis.html>>.
- [18] U.K. CILIP. 2005. "CILIP Accreditation Instrument 2005." [online]. [cited 2008.12.30].  
<<http://www.cilip.org.uk/NR/rdonlyres/AB7FB628-3922-4681-85AA-3E75593A0389/0/A CCREDITATIONWEB.pdf>>.
- [19] U.K. CILIP. "Cours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currently accredited by CILIP." [online]. [cited 2008.12.30].  
<<http://www.cilip.org.uk/qualificationschartership/Wheretostudy/>>.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Dong-Chul Kwack. 2009. "Librarian Certification in Korea: History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339-361.

- [2] Dong-Chul Kwack, Kyung Shim, and Cheong-Ok Yoon. 2008. *Saseojikwon Jagyeokkyogeon Gaejeongeul Wihan Gichoyeongu*. Seoul: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 [3] Se-Hun Kim. 2004. *Doseogwan Jeonmunseong Ganghwa Bangan: Saseo Jeonmunseongeul Jungsimeuro*. Seoul: Korea Culture and Tourism Policy Institute.
- [4] Young-Ai Um. 2003. "A Study on the Core Courses of the Department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3): 33-49.
- [5] Byung-Mok Lee. 2005. *Doseogwanbeopgyuchonglam*. Jeon2gwon. Seoul: Gumimuyeokchulpanbu.
- [6] Jae-Whoan Lee, Ki-Myung Lee, Jung-Ho Kim, You-Ra Youn, and Eun-Ju Lee. 2005. "Evaluation and Requirement of Librarians on LIS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4): 45-69.
- [7] Dong-Youl Jeong. 2007. "A Study on the Credential System of Libraria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2): 5-29.